

제 호							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(석유류·석탄 및 일반광업체용)							
업체명				대표자			
소재지				전화번호			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임무를 고지하니 자체 실시계획 작성 등 전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
물자의 품명	규격 또는 구조	단위	수량	임무고지 내용			임무수행기간
				임무의 내용	사용기관 인수기관	인도·인수 장소	부터 까지
년 월 일							
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							
직인							

자 르 는 선

제 호		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		
업체명		대표자
소재지		전화번호
수령인	성명 (서명 또는 인)	대표자와의 관계
	수령일	수령 장소